보험목적의 동일성

이 순 관
〈한국보험공사 조정과 대리〉

1. 사고의 개요

1986년 6월3일 보험계약자Y와 보험자K사이에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56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1동 60평의 공장건물과 동 공장건물내에 수용하고 있는 동산등에 대하여 보험금액은 공장건물 1천만원, 기계시설일체 3천만원, 완제품, 반제품 및 원자재일체 6천만원으로 보험기간은 1986년 6월 3일부터 1989년 6월 3일까지 3년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1987년 3월21일 위 보험 계약상의 보험목적물소재지가 아니고 보험계약자Y가 공장이전을 위해 새로 매입한 바 있는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소재의 신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동 공장건물 및 동 건물내의 기계시설 및 동산 등이 소실되었으나 K사에서는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이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상을 거부하자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보험계약자Y가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분쟁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보험계약자Y는 공장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소 이전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건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1987년 3월초 화재보험 10회분 분납보험료를 지급할 때에 공장소재지 이전에 따른 주소지변경을 K사소속 S대리점에 구두로 통보하여 보험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사가 통지의무 불이행등의 이유로 동 건을 면책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K사는 첫째 장기화재보험은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동 보험약관 제6조(통지의무)에 따라 지체없이 서면으로 K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소재지 변경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K사는 이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며, 둘째 보험목적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서면으로 이행하였다하여도 K사에서는 보험목적물 실사 후 위험의 변경 증가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세째 보험의 목적인 건물 및 동산의 일부가 보험증권상의 소재지에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보험계약자의 주장대로라면 K사로서는 양 소재지의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로 보험증권상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소재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없으므로 이 보험약관 제11조(보험계약의 해지) 및 상법 제652조(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면책처리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판정 내용

동 화재보험 분쟁을 심의한 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증권상의 보험목적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실된 공장건물 및 동산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K사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장기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는 이 약관에 따라 가입한 물건(보험의 목적)이 화재를 입은 경우의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보험증권 및 청약서상 보험의 목적소재지가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565번지로 되어 있어 본 건 장기화재보험계약이 위에서 약정한 소재지에 있는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보험목적의 소재지 변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 보통약관 제6조(통지의무)에 따른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K사가 약정한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밖에서의 화재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아울러 보험계약자Y가 제출한 서류로서는 위 약관 제6조에 따른 통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 화재 사고로 소실된 재산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보험계약자 Y의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결론지었다.

4. 후설

화재보험은 보험의 목적인 물건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개별 보험, 집합보험 및 총괄보험으로 분류된다. 개개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개별보험이라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다수물건의 집합체를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집합보험(상법 제686조)이라 하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사고발생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는 보험을 총괄보험(상법 687조)이라 한다. 총괄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특별히 정하여지지 않더라도 일정한 보험목적이 소재하는 장소나 건물을 보험증권상에 정하고 그 소재지 내에 있는 일정범위의 물건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물건이 수시로 교체되어 특정되지 않아도 화재사고 발생시에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특정된 다수물건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집합보험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화재보험증권에는 상법 제6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재보험 종류의 구별을 떠나서 상법 제666조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건물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건물의 구조와 용도를 추가로 기재하고 또한 동산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등을 기재토록 한 점으로 미루어 화재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존재하는 소재지나 건물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화재보험에서는 보험목적의 소재를 보험증권에 명기함으로써 보험목적의 동일성 유무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서, 일정 장소에 수용된 것에 한하여 보험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수용장소를 벗어났을 때에는 이미 보험목적의 동일성은 상실되는 것이다. (동산 종합보험에서는 불특정 장소에서의 위험을 담보하므로 보험증권 기재의 담보지역내이면 어떤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여도 담보한다.) 따라서 보험목적의 소재지를 벗어난 곳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다른 소재지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동산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또한 소재지 변경 내용을 보험자에 통보하여 동의를 받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지 않는 한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동일한 보험목적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건에 있어 보험계약자Y가 보험목적 소재지 변경에 따른 이 보험계약 소정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하에서는 소재지 변경에 따른 위험의 현저한 증가변경과 관련한 K사의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목적소재지를 벗어나서 보험목적의 동일성이 없는 소실물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것으로 사료된다.